

'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

1997. 5.

감 사 담 당 관

순 서

일 반 현 황

'97 주요업무계획및 추진실적

○ 자체 감사 기능의 내실화

○ 예방 감사 활동 강화

○ 공 직 기 강 학 립

○ 민 원 관 리 운 영 의 내실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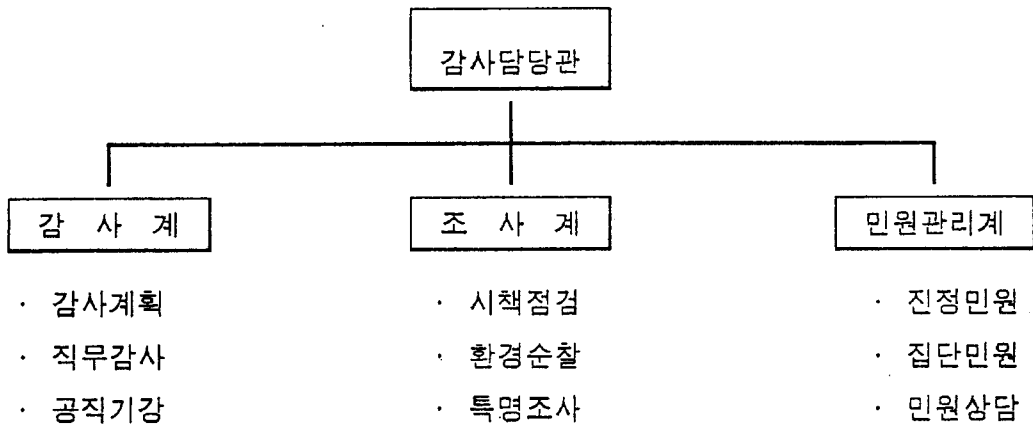
○ 환 경 순 찰 의 생활 화

○ 공 직 자 재 산 등 록 업 무 추 진

일 반 현 황

【 조직 및 인력 】

□ 조 직 ----- 1 담당관 3 계



※ '95. 9. 15 직제조정으로 환경순찰계 폐지

□ 인 력 ----- 정원 17명, 현원 18명

구 분	계	5 급	6 급	7 급	8 급	9 급	기능직	비 고
정 원	17	1	3	4	6	2	1	
현 원	18 (1)	1	3	9 (1)	4		1	
증 감	+1			+ 5	- 2	- 2		

※ ()안은 별정직임.

【 계별 주요업무 】

계 별	주 요 업 무
감 사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·동에 대한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계획 변경 ○ 각종 감사실시를 위한 자료·여론등 수집 ○ 감사결과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시정조치 ○ 외부기관(감사원, 서울시) 감사결과 집행전말 결과 보고 ○ 사정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 ○ 구·동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
조 사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사정기관(검찰, 경찰) 비위통보사항 조사 및 조치 ○ 각종 주요시책업무 추진실태 점검 ○ 신문·방송등 언론보도사항 조사 ○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처리 ○ 기관장 특명사항 조사 및 결과보고 ○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 및 순찰지적사항 조치·관리
민 원 관 리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·진정등 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종합분석 ○ 집단민원 및 미해결민원의 총괄 관리 ○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○ 각종 시민불편사항 조사 및 개선 ○ 전화·방문민원 접수 및 총괄 관리

【 위원회 현황 】 ----- 3개 위원회

구 분	공직자윤리위원회	민원심의위원회	관용심사위원회
설치근거	공직자윤리법 제9조	동조례 제6조	동규칙 제3조
구 성 일	'93. 9. 6.	'93. 12. 31.	'93. 8. 31.
설치목적	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	구정관련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방안 제시 및 대화를 통한 해결유도로 민원조기해소 및 확산 예방	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법규해석이나 집행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관용처리
주요기능	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.승인.공개 및 심사결과 허위 또는 중대과실 인정시 경고 해임.징계등 조치	분쟁민원의 조정 알선 및 처리대안 제시	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양정심의 및 구청장에게 관용건의
구성인원	5 명 (위원장 : 이 익 순)	15 명 (위원장 : 구청장)	7 명 (위원장: 재무국장)
개최주기	월 1 회	사안발생시	사안발생시

'97 주요업무계획및 추진실적

- 자체 감사 기능의 내실화
- 예방 감사 활동 강화
- 공 직 기 강 학 립
- 민 원 관 리 운 영 의 내실화
- 환 경 순 찰 의 생 활 화
- 공 직 자 재 산 등 록 업 무 추 진

자체감사기능의 내실화

【 정기 및 특별감사 】

-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·여론등을 사전에 수집하여 처리단계 심층 분석
-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로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제고

- 자체 종합감사 — 6개동 (신길7, 대림1.2.3동, 영1.2동)
 - 감사기간 : '97. 3. 17 ~ '97. 4. 9 (1개동당 3일)
 - 감사결과 : 신분상조치 - 69명 (훈계25, 주의촉구 44명)
 - 재정상조치 - 추징 51건, 2,619,090원
 - 환불 8건, 44,960원
 - 행정상조치 - 102건 시정

- 부분감사 — 4개분야(유기한민원, 환경관리, 도시정비, 지역경제)
 - 감사기간 : 년중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
 - 감사결과 ('96. 유기한 민원)
 - 기간 : '97. 2. 17 ~ 2. 28 (10일간)
 - 대상민원 : 23,749건
 - 위반건수 : 39건
 - 조치 : 신분상조치 35명, 시정 21건

- 외부감사 수감 (서울시)
 - 도시정비분야 : 광고물 인·허가
 - 감사기간 : '97. 3. 5 ~ '97. 3. 13 (7일간)
 - 감사결과 : '97. 5. 1 서울시로부터 감사결과 시달(조치증)

예방감사활동강화

【 일상감사의 내실화 】

구정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

- 최종 결재권자 결재전 감사부서에서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
- 시행착오 및 행정낭비요인 해소
-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

- 일상감사시기 : 국장결재후 부구청장 결재전
- 대 상 업 무
 - 3,000만원이상 물품구매, 제조, 서비스업, 가공용역, 임대차등 기타계약
 - * 수의계약은 1,000만원이상
 - 5,000만원이상 확정채무의 지출품의
 - 도급액 2억원이상 공사의 지출품의
 - 관광, 일반호텔 영업허가 및 옥상광고물의 인.허가
 - 기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업
- 중점 감사 내용
 - 주요업무처리의 적법성·타당성·효과성등 검토
 - 사업의 우선순위, 시민의 수혜도, 사업규모의 적정성등
 - 유관부서와의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
 - 사업비의 적정설계여부
- 점검결과 ('97. 4. 30현재)
 - 점검건수 : 32건
 - 조 치

		예산절감 : 4,732,830원
		의견제시 : 11건

【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태 점검 】

구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실태에 대한 시의성 있는 감사실시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통한 자치행정 구현

□ 점검 및 활동사항

- 공 약 사 항 : 12개분야 75개 단위사업
- 지 시 사 항 : 특별지시, 회의지시, 기타 수명사항
- 사 책 사 업 : 교통·청소등 구정 역점 사업
- 지역여론·동향 : 구정관련 시민여론과 동향파악

□ 점 검 방 법

- 정기 및 부정기 현장위주의 확인 점검
- 추진계획, 방법, 진도의 적정여부 확인
- 보고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 파악

□ 점 검 결 과 ('97. 4.30 현재)

- 대 상 : 해빙기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사항외 6개분야
(환경취약지역, 재설대책, 대중교통이용시설, 가로수및 수벽관리, 녹지대및 도로법면, 근린공원 관리실태)
- 조 치 : 보·차도 세차행위등 93건 시정

공 직 기 강 확 립

□ 근무기강의 부서단위 책임관리체제 확립

- 관리직의 솔선수범과 엄격한 신상필벌 이행
- 부서단위 정신교육 강화로 근무기강 자율 관리
- 근무기강 위배에 대한 감독자 연대책임 강화

□ 복무실태 점검 강화

- 점검시기 : 명절·연말연시·휴가철 등 취약시기 중점 (필요시 수시)
- 점검대상 : 구·동 전부서
- 중점점검 : 출근·출장·무단이석·출장미귀 등 복무위반 실태
- 점검결과 및 조치
 - 점검회수 : 3회 (설날연휴 2회, 토요일일근무제 이행실태 1회)
 - 점검대상 : 전부서
 - 점검내용 : 직원복무기강 및 민원처리실태
 - 결과 및 조치 : 지참등 위반자 6명에 대하여 당숙직 및 자체 소양교육 실시

□ 무사안일의 근원적 추방 — 직무감찰 강화

- 무소신·적당주의 완전 추방
 - 정기·수시 및 특별감사활동을 통한 확인
 - 취약분야·취약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
 - 요령, 보신주의자 색출 엄단

- 묵인·방치성 부조리 근절
 - 적출사례 집중관리로 재발방지
 - 불합리한 제도의 지속적 정비

- 민원부서 기강점검의 강화
 - 참구민원 특별감찰활동 강화
 - 부조리 및 부조리요인 발굴개선 추진

- 관리직의 지도·감독체계 확립
 - 부조리 취약분야 관찰지도제 강화
 - 간부직 현장확인제 확행
 - 업무 일일결산제 이행

민원관리운영의 내실화

- 적극적 민원처리자세 전환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구현
- 민원의 사전예방·적극적 대처 및 해소책 강구
- 민원관리제도 효율적 운영 및 제도개선 활성화

□ 적극적 민원처리자세 확립

- 생활민원의 최우선 처리를 위한 제도 및 대책강구
 - 민원요인 사전 심층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및 적극적 민원해소
 - 민원현장 직접 확인조사·민원청취 강화로 신중한 민원처리
 - 민원관련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 및 능동적 대처
- ※ '97. 4월말 현재실적 : 273건 (요구수용 106, 이해설득 133, 불가 24, 타기관이첩 6, 진행중 4)

□ 민원처리 운영 활성화

- 구청장실 개방 —— 직접대화 처리 (38건)
 - 『구민의소리』, 『구민의소리함』, 『전화 : 방문민원』 설치운영
 - 민원 및 부조리 고발등 신속처리
 - 구정에 대한 건의·개선사항등 적극 반영
- ※ '97.4월말 현재 실적 : 77건(요구수용 30, 이해설득 34, 불가 2, 타기관이첩 3, 진행중 8)
- 『행정사무착오보상제』 운영 —— 정당한 민원인에게 전화카드 제공 (5,000원 상당)
- ※ '97.4월말 현재 실적 : 31건(일반행정 22, 재무행정 4, 도시교통 3, 청소행정 2)

○ 집단민원해소

- 집단민원 발생요인 사전파악 해소 — 이해설득, 제도개선
- 『집단민원관리카드』 작성 비치로 민원처리 일관성·유지

□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

- 각종 민원사항 심의 및 분쟁의 조정
- 민원사항의 처리방안제시 및 시정건의
- 부당한 민원사항 설득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

환경순찰의 생활화

□ 중점 순찰대상

- 각종 도로시설물, 안내표지판등 파손 여부
- 육교, 지하보·차도, 가드레일등 유지 관리실태
- 노상쓰레기 적치물, 불법광고물, 노점상등 미관저해행위
- 공사장 주변등 시민통행 불편요인 및 안전저해 요인
- 해빙기 및 장마 전·후 시설물 안전관리여부등

□ 추진 방법 — 순찰반 활용 수시 순찰

□ 순찰결과 ('97. 4. 30 현재)

- 일반 순찰 : 221건 적출 정비
- 기획 순찰 : 7개분야 101건 정비
(해빙기 안전관리및 시민불편사항, 환경취약지역 재설
대책, 대중교통이용시설, 가로수및 수벽관리, 녹지대및
도로법면, 근린공원 관리실태)
- 특별 환경정비
 - 정비 대상 : 타구와 경계하천 2개소(안양천, 도림천)
 - 정비 실적 (안양천)

구분	무단투기 토사정비	쓰레기및 소각잔재	교수부지 요철정비	기 타	비 고
실적	15톤25대분	2.5톤4대	20 개소	마른수초 정비 및 경작지,제방정비 등	

※ 도 립 천 (별 도)

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

- 공직자 재산등록 -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
-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 - 구민 봉사자로서 공직 윤리관 확립

□ 재산등록대상

- 지방자치단체장
- 4급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
- 감사·세무부서 5급이하 공무원

□ 재산등록범위 및 종류

- 등 록 범 위 : 본인·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
- 재 산 의 증 류 : 동산·부동산등 전재산

□ 중점 추진

-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
- 신 규 재 산 등 록 : 신규임용·의무부서 전입등 사유 발생시
- 퇴직공무원 취업승인 :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
- 공직자 선물 신고 : 접수 및 관리